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공정거래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거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 법 위반 기업 명단을 5년간 공표
	인사/노무	②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의무화. 종업원의 복지 증진, 우리사주제 등 종업원의 재산 형성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등 23개 사항 의결. 경영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회 계류안	건설/부동산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공제 대상을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모든 공사로 확대
공포 법령	ESG	④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탄소중립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입법/행정 예고	공정거래, 국가계약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등으로 인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민형배 (더불어민주당)</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원 이하여서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한 실정임. ■ 이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9조 등). <p>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S1Y0Z3W2U4Q1X1H5D2S1Z8T3W2L3</p>	<p>시사뉴스. 21.04.16. 하도급법 입법제안 기자회견...“징벌적 손해배상 담아야”</p> <p>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54529#ODLM</p>	<p>21.04.21. 제안</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요 경영사항의 협의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함.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아울러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신뢰 제고를 도모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처우, 이들의 선출절차 및 그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p>서울경제. 21.04.22. 기업과 교감한다더니...또 친노동법 내는 與</p> <p>https:// www.sedaily.com/ NewsView/22L6NG1BM9</p>	21.04.20. 제안

라.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총회를 두어 근로자총회에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 임기,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사항, 이 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안건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관한 추천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주요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 정하고, 의결요건,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자.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또는 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노동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38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X1U0S3I0I2V1H6A0V2X4U3C7S7R0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송갑석 (더불어민주당)</p>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은 건설·플랜트·제조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임. 이에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국내외 프로젝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주실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정하고 적정한 대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도록 하여 산업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엔지니어링이 선도하는 대형·융복합 프로젝트인 플랜트, 제작·설치 및 공사 등의 보증·공제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엔지니어링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융합기술 및 OEM 고도화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플랜트 시설물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험운전, 상업운전, 운영·운용을 “운전”으로 통합하고, “정비”를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규정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엔지니어링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함을 규정(안 제4조). 다. 엔지니어링정책 기초자료 활용과 사업자 선정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주실적신고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7조의2, 제8조제3항 신설). 	<p>한국경제 21.04.21. 건설조합 "7만3000개 중소 건설사 타격 우려"</p> <p>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067431</p>	<p>21.01.25. 제안</p> <p>21.03.08.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p> <p>21.04.22. 소위 상정</p>

라. 엔지니어링기술 선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연계·융합·분석·제공 등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활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마. 사업자 신고시 15일 이내 수리 및 지연사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미통지시 신고수리 된 것으로 간주규정을 두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시 보유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신고간주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인력관리 및 불필요한 민원 등 논란을 제거하도록 정함(안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바. 발주청이 대가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명문화하고,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공제조합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제사고 발생시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아.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고조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P1P0L1U1K9J0U9S2P0K1Q1H6I0O8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2020년 교토의정서의 만료로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래에 있을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출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별도 파일 첨부</p>	<p>뉴시스 21.04.26. 정부 연구기관 18곳,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비전 선포</p> <p>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6_0001419670&clD=10401&pID=10400</p>	<p>21.04.20. 공포</p> <p>21.10.21. 시행</p>

4. 입법/행정 예고 법안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동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도하고자 함 단기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단기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따라 필요 시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부정당제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신고, 조사협조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도 감경, 면제하러 수 있는 근거 마련 		21.04.20. ~ 21.05.31.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도 파일 첨부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김재원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59
E : kimjw@draju.com



윤형석
변호사

T : 02-3016-8737
E : hsyoon@draju.com

공정거래대응팀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최선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98
E : sachoi@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ESG본부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02
E : shki@draju.com

국가계약팀



홍창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43
E : greengrass@draju.com